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구단59478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원 고 권○○

피 고 서울마포경찰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5.

판 결 선 고 2017. 12. 13.

주 문

1.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60일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사고

1) 원고는 2016. 10. 22. 15:45경 서울 마포구 ○○로 ○○ ○○○○○ 세차장에서 ○○더○○○○호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자동세차를 마쳤다. 이 사건 차량은 자동세차를 마치고 나온 이후 갑자기 출발하여 인도를 지나 ○○대교 방면에서 ○○로타리 방면 편도4차로 도로를 횡단하였다.

2) 이 사건 차량은 위 주유소 쪽 3차로에서 그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강○○이 운전하던 □□□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 진행하여 2차로에서 그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장○○이 운전하던 △△△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며, 그 차량이 밀리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박○○이 운전하던 ◇◇◇◇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차량은 그 후 중앙선을 넘어 계속 진행하여 서울 마포구 ○○로 ○○ ○○○ 건물 외벽을 충격하고 정지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위 강○○, 장○○, 박○○ 및 각 동승자 중 7명이 경추 염좌 등 2주의 상해, 1명이 다발성 늑골 골절 등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 대하여, 안전운전 의무 위반(벌점 10점), 인적 피해 교통사고(중상 1명 15점, 경상 7명 각 5점)로 벌점 60점이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행정심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급발진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해석

지방경찰청장(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였음)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구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한편,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법 제93조 제2항). 그리고 위 위임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은 자동차의 운전 중 교통사

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달리하는 기준을 정하면서 '비고'로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및 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이유로 사고결과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제4호증, 을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을 검사한 결과 하였는데, 브레이크 시스템에 고장 또는 결함이 없었다는 점, ○○○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적절히 작동하였다면 제동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인 점, 세차장 CCTV 영상에서 이 사건 차량 브레이크등의 점등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차량에서 이른바 급발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가)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 이른바 급발진 현상이란 운전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엔진 출력의 급상승과 함께 제동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태가 동시에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그 실체와 원인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아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사고 차량에서 급발진 현상이 발생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곤란하다.

② 급발진 현상의 원인으로는 전자제어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이 가장 많이 제기된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후 충격 과정에서 엔진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전자제어시스템의 고장 또는 결함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ACU(Airbag Control Unit)에 EDR(Event Data Recorder)이 내장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사고 상황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③ 이 사건 차량 내부 블랙박스(갑 제4호증)와 주유소 CCTV 영상(을 제23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은 갑자기 엔진음이 커지면서 출발하였고(갑 제4호증 기준 00:00:04경), 원고와 배우자는 위 차량 진행 중 "왜 이러냐"라는 취지로 소리쳤으며(원고의 경우 갑 제4호증 기준 00:00:13경), 배우자의 비명과 함께 벽을 들이받고 정지(갑 제4호증 기준 00:00:16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굉음과 차량 내부자들의 상태 등은 이른바 급발진 상황에서 많이 발견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④ 주유소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이 주유소 부지를 벗어날 무렵까지 그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 그 이후, 즉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원고가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원고가 중앙선을 넘어선 이후 방향을 틀어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 사건 차량을 진행시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정도로 상황 분석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전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⑤ 위 ③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어 도로에 진입

한 것은 이른바 급발진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위 ④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확보된 영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는 목격자에 대한 조사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로의 CCTV, 스키드마크, 차량 타이어 상태 등의 확인)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었던 까닭에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⑥ 달리 원고 본인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거나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지형

관 계 법 령

■ 구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③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2)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48조	10

나.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 분		벌점	내 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비고)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